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69호

「대전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예고

# 1. 제안이유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 려하여 대전광역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 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 (안 제3조).
-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대전광역시장은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junanil@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여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 2.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 제3조(적용대상 및 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른 사무처를 말한다.
  - 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 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 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권장)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조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부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 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4조 일반원칙

비차별

- 1.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다른 당사자의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어느 당사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에게, 자신(조달 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부여한다.
  - 가. 국내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 그리고
  - 나. 다른 당사자의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
- 2.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 가. 외국인과의 연계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 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당사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 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구·군),
- 2) 대상금액 :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 나)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3 억 원 이상)
-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 대상 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 · 용역 3.1억 원 이상
-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 대상 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 · 용역 3.1억 원 이상
-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 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 사
- 2) 대상금액 :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 나) 물품·용역 6.3억 원 이상